



『 외화수퍼플러스 』 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(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)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 품 명 : **외화수퍼플러스**
- 상품특징 :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 상품

2 거래 조건

: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(증서)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.

(2025.09.01 현재, 세전)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가입대상	제한없음												
거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규 : FLOBANK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■ 해지 : FLOBANK 웹사이트 및 모바일 												
상품유형	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(외화보통예금)												
가입금액	제한없음												
예치통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6개 통화 (USD, JPY, EUR, GBP, AUD, CNH) 												
기본금리 (연환산 이율(%)), 세전)	<p>입금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보통예금,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</p> <p>※ 고시금리 적용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예치잔액(법인, USD 환산)</th> <th>예치잔액(개인, USD환산)</th> <th>고시금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만불 미만</td> <td>1만불 미만</td> <td>무이자</td> </tr> <tr> <td>1만불 이상 ~ 50만불 미만</td> <td>1만불 이상 ~ 10만불 미만</td> <td>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</td> </tr> <tr> <td>50만불 이상</td> <td>10만불 이상</td> <td>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와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금리 중 높은 금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예치잔액(법인, USD 환산)	예치잔액(개인, USD환산)	고시금리	1만불 미만	1만불 미만	무이자	1만불 이상 ~ 50만불 미만	1만불 이상 ~ 10만불 미만	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	50만불 이상	10만불 이상	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와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금리 중 높은 금리
예치잔액(법인, USD 환산)	예치잔액(개인, USD환산)	고시금리											
1만불 미만	1만불 미만	무이자											
1만불 이상 ~ 50만불 미만	1만불 이상 ~ 10만불 미만	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											
50만불 이상	10만불 이상	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와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금리 중 높은 금리											
이자지급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자원가식(매년 3, 6, 9, 12 월 제 3 금요일에 셈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함) ■ 이자지급식(예금 지급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, 미인출 잔액 및 유예분을 결산일 원가) 												
예금지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입선출 												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화 휴면 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별도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관련된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												

원금 및 이자지급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<p style="color: red; margin-top: 5px;"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■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사항 없음
연계 제휴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해당사항 없음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■ 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99-1111,0,1), 고객의소리(080-933-1111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hana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http://www.fcsc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금자 보호여부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해당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border-radius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small>예금보험공사</small> 보호금융상품 <small>1인당 최고 1억원</small> </div> <div style="flex-grow: 1; margin-left: 10px;"> 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 </div> </div>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율로 합니다.
-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이 예금은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.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88-1111, 1599-1111)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부록**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**

용어	설명
압류	■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
가압류	■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
질권설정	■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
출연	■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■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
경과기간	■ 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